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청사 및 지역축제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2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청사 및 지역축제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 | 3 |



## I. 개요

### 1.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26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군·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청사 및 지역축제의 심폐소생 응급 장비 구비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지역축제에 있어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br>-----<br>-----<br>-----<br>-----<br>-----. |
| 1. ~ 6의3. (생략)                                                                                                      | 1. ~ 6의3.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6의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청사는 제외한다.</u>                   |
| <u>&lt;신설&gt;</u>                                                                                                   | <u>6의5. 참여 예상 인원이 대통령</u>                                                           |

| 현행                    | 개정안                                                             |
|-----------------------|-----------------------------------------------------------------|
| 7. (생략)<br>② ~ ⑤ (생략) | <u>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br/>지역축제</u><br>7. (현행과 같음)<br>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sup>1)</sup>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sup>2)</sup>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AED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소의 상세내역은 [표 1]과 같음.

[표 1]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의 유형 및 기준

| 유형          | 기준                                                                   |
|-------------|----------------------------------------------------------------------|
|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 구급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 여객 항공기 및 공항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 철도차량 객차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

- 1)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 2)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 유형                    | 기준                                                                                                                                                                                                                                                                                                                                                                                                                                             |
|-----------------------|------------------------------------------------------------------------------------------------------------------------------------------------------------------------------------------------------------------------------------------------------------------------------------------------------------------------------------------------------------------------------------------------------------------------------------------------|
|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 관광지·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
| 다중이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역사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li> <li>-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li> <li>-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li> <li>-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li> <li>- 경마장</li> <li>- 경주장</li> <li>-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li> <li>-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li> <li>- 중앙행정기관 청사(「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li> <li>- 시·도 청사(17개 시·도 청사)</li> </ul> |

자료: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 개정안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sup>3)</sup> 청사 및 지역축제에 AED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행정기관 청사 및 시·도 청사가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은 시·군·구 청사와 지역축제를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효과를 가짐.

□ 최근 5년간 AED 전국 설치현황은 [표 2]와 같음.

- 전국의 AED 총 설치 대수는 71,693대,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는 14.0대로(2023. 12. 31. 기준), 총 설치 대수와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설치 대수 증가율 11.9%

\* 시·도별 AED 설치현황: [참고 1]

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표 2] 최근 5년간 전국 AED 설치현황(2019~2023년)

| 연도   | 총 설치 대수(대) | 전년 대비 증감률(%) |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대) |
|------|------------|--------------|------------------|
| 2019 | 45,183     | 10.4         | 8.7              |
| 2020 | 50,429     | 11.6         | 9.7              |
| 2021 | 53,910     | 6.9          | 10.4             |
| 2022 | 62,233     | 15.4         | 12.1             |
| 2023 | 71,693     | 15.2         | 14.0             |

주: 1. 설치 대수는 각 연도말 누적 기준이며, 인구 수는 해당 연도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수 기준임.  
 2. 설치 대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무구비 시설·장소 및 기타 의무는 아니나 자체 구비된 시설·장소에 설치된 대수의 총 합계임.  
 자료: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4. 10.)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정안의 내용 중 먼저 시·군·구 청사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른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는 아니나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시·군·구 청사에 자체적으로 AED를 구비하고 있음.

- 현재 전국 시·군·구 청사의 AED 설치율은 83.2%임.

[표 3] 전국 시·군·구 청사 AED 설치현황(2025년)

| 시·군·구 개수 | AED 설치 시·군·구 청사 개수 | 설치율   |
|----------|--------------------|-------|
| 226      | 188                | 83.2% |

주: 1. 시·군·구 개수는 자치 시·군·구 기준임.  
 2. 시·군·구 청사의 AED 설치 여부는 하단 정보시스템 내 AED 설치장소 기재명칭이 해당 청사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기재명칭은 청사가 아니나 실제 해당 청사 공간 내 설치된 일부 경우를 포함하였으므로 집계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AED가 아닌 심폐소생 응급장비는 지자체에서 동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시스템에서 AED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시·군·구 청사에도 기타 심폐소생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제공(<https://www.e-gen.or.kr>) -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 시·군·구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2025. 4. 조회 기준)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AED가 없는 시·군·구 청사에 AED를 설치하기 위해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 부담<sup>4)</sup>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sup>5)</sup>, AED 설치를 통해 지역민과 민원인에 관한 위급상황에 보다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지역축제를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많은 인파가 순간적으로 밀집되는 행사의 응급 상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응급의료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행사 또는 지역축제에 대해 AED 장비가 확보되고 있음([표 4]).

- \* 「응급의료법」: 대규모 행사시 응급이송수단(구급차등) 확보 의무가 있으며, 119 구급대·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및 특수구급차에는 AED가 구비됨.
- \* 「재난안전법」: 지역축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구급차 현장 대기 여부 및 AED 상태 점검사항이 포함됨.

[표 4] 대규모 행사 또는 지역축제에 대한 AED 확보 관련 법령

| 구분 | 응급의료법                                                                                      | 재난안전법                                                                                                                                 |
|----|--------------------------------------------------------------------------------------------|---------------------------------------------------------------------------------------------------------------------------------------|
| 대상 | 대규모 행사<br>-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 지역축제<br>-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 <sup>*</sup> 이 있을 경우<br>*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 사용 |
| 주체 | 행사 개최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br>(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                                                                                     |
| 의무 | 응급의료 인력(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이송수단(구급차등) 확보 의무<br>※ 119 구급대·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및 특수구급차에는 AED구비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br>(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는 구급차 현장 대기 여부 및 AED 상태 점검 포함)<br>※ 119 구급대·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및 특수구급차에는 AED구비                 |
| 근거 | 법 제54조의3,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호<br>시행령 제27조의3<br>시행규칙 제38조, 제44조의2                            | 법 제66조의11<br>시행령 제73조의9<br>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4. 9.)                                                                            |

자료: 각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

4) 「응급의료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5) AED의 가격은 업체·모델 및 구입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기준으로 통상 1대당 150~ 250만원 가량임.

□ 덧붙여 방문인파가 많고 선호되는 전국 주요 관광지·관광단지(전국 279개소, 상세내역 [참고 2])의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에도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 따라 AED가 설치되므로, 이러한 시설·장소에서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AED가 구비되는 효과가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축제의 응급상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령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응급의료법」의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지역축제를 명시하고자 할 경우, 축제 장소의 가변성 및 야외 개최 등으로 인해 매 축제에 대해 개별 AED를 설치한다면 관리와 이동·보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ED 장비가 갖추어진 구급차등을 확보할 경우 AED를 갖춘 것으로 보는”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 개정안 시행 전에 시·군·구 청사 및 지역축제 장소에 AED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는 개정규정의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부칙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AED의 의무구비 시설·장소를 확대하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4건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5]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 확대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의안번호<br>(대표발의)     | 발의일        |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                                                                                                                                                                                                                                                                                                                                                   |
|--------------------|------------|-----------------------------------------------------------------------------------------------------------------------------------------------------------------------------------------------------------------------------------------------------------------------------------------------------------------------------------------------------------------------|
| 2203226<br>(박주민의원) | '24.8.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li> <li>-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li> </ul>                                                                                                                                                                                              |
| 2204056<br>(인요한의원) | '24.9.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li> <li>-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li> <li>-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li> <li>-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li> <li>-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ul> |
| 2206389<br>(임호선의원) | '24.12.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li> <li>※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구비</li> </ul>                                                                                                                                                                                           |
| 2210091<br>(김민석의원) | '25.4.24.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1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대합실                                                                                                                                                                                                                                                                                                                     |
| 2211159<br>(김재원의원) | '25.6.30.  |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                                                                                                                                                                                                                                                                                                                     |

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장소에 대해 설치하도록 법안에서 정하는 경우 “\*” 표기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 한편,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AED가 적재적소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설치되는 AED의 점검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향후 필요함.

□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AED를 설치한 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AED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AED 점검·관리실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sup>6)</sup>.

-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AED 설치 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나타나는 등([표 2]) AED 설치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경우 총 AED 설치 대수가 12,641대, 경기도의 경우 13,824대에 달함<sup>7)</sup>.

- AED 설치의 확대는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AED를 점검하고 개별 장비의 내용연수와 소모품을 관리·교체<sup>8)</sup>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sup>9)</sup>.

□ AED 점검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AED 의무구비 시설·장소에 AED를 설치한 자가 매월 1회 이상 AED를 점검한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미통보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시행예정<sup>10)</sup>이나,

AED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경기도의 AED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감사대상인 총 2,132대(479개소)의 AED 중 배터리·패드 유효기관 경과 등으로 본체 작동 부적합에 해당하는 AED은 763대(154개소)로 35.7%에 달함(경기도 감사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정감사 보고서, 2020. 8.).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소 종합감사에 따르면 감사대상인 총 18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포함) 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매월 1회 AED 정기점검 의무를 위반함(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2022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2023. 4.).

7) 2023. 12. 31. 기준, 의무 및 기타 자체구비 시설·장소 설치대수의 합계(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4. 10.)

8) AED의 내용연수는 장비마다 각기 다르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소모품의 유효기간 역시 장비마다 차이는 있으나 배터리의 경우 통상 약 4년, 부작용 패드의 경우 약 2~3년임.

9) 서울시의 경우 2025년 AED 점검 및 AED 관리자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위탁예산으로 총 8,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1075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5. 4.), 사업수행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10)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3의5호(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5. 8. 17.)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유동인구가 많은 시·군·구 청사와 많은 인파가 일시 집중되는 지역축제에 AED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
  - 다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군·구 등 청사는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
  - 지역축제는 대부분 실외에서 일회성으로 개최되어 규정 신설 시 AED 설치 장소 및 관리자 선정 등에 애로가 있으며, 지역축제에 AED 설치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미 「응급의료법」 및 「재난안전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지자체에 충분히 홍보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신중한 검토 필요
- (대한심폐소생협회)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청사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AED 설치시설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수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민센터급 이상의 청사에는 AED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을 위해 향후에는 모든 규모의 지역축제로 AED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응급장비 설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응급 대응 능력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개정에는 반대

- 이미 청사를 포함한 많은 시설에 AED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 소홀과 사용 미숙으로 인해 실질적인 응급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역축제의 경우 개최 일정과 규모가 유동적이며 장소의 특성 또한 다양하므로 모든 지역축제에 일률적으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임.
- 장비 보급의 실질적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장비 실태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체계적 접근, 우리 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논의를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등이 필요

- (대한응급구조사회) 청사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축제 또한 현행법에서 행사에 응급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는 일정·장소·날씨 등 변수가 존재하여 AED 설치·이전·이동 및 관리·보호에 많은 인력과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울산광역시) 현행 「재난안전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축제에 AED가 설치된 구급차 배치가 가능하며, 일회성 행사인 지역축제는 AED 설치·신고·점검 등 장비관리 주체와 실제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축제를 AED 의무구비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삭제 요망

문 의 처

02)6788-5509

## 【 조문자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도·감독) ① (생략)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예정 (시행일: 2025. 8. 17.)]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생략)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7. (생략)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의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1. 특수구급차

나. 응급 처치용

3) 심장 박동 회복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 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                                   |
|--------|-----------------------------------|
| 【참고 1】 | 사·도별 AED 설치 현황 (2023. 12. 31. 기준) |
|--------|-----------------------------------|

| 구분  | 총 설치 대수(대) |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 (대) |
|-----|------------|-------------------|
| 전 체 | 71,693     | 14.0              |
| 서울  | 12,641     | 13.5              |
| 부산  | 4,090      | 12.4              |
| 대구  | 2,916      | 12.3              |
| 인천  | 4,369      | 14.6              |
| 광주  | 2,019      | 14.2              |
| 대전  | 1,917      | 13.3              |
| 울산  | 1,557      | 14.1              |
| 세종  | 722        | 18.7              |
| 경기  | 13,824     | 10.1              |
| 강원  | 2,737      | 17.9              |
| 충북  | 2,753      | 17.3              |
| 충남  | 3,629      | 17.0              |
| 전북  | 2,341      | 13.3              |
| 전남  | 4,984      | 27.6              |
| 경북  | 4,397      | 17.2              |
| 경남  | 4,258      | 13.1              |
| 제주  | 2,539      | 37.6              |

주: 1. 설치 대수는 연도말 기준이며, 인구 수는 해당 연도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수 기준임.  
 2. 설치 대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무구비 시설·장소 및 기타 의무는 아니나 자체 구비된 시설·장소에 설치된 대수의 총 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4. 10.

|        |                                   |
|--------|-----------------------------------|
| 【참고 2】 |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현황 (2024. 12. 31. 기준) |
|--------|-----------------------------------|

□ 관광지: 226개소

| 시·도 | 지정개소 | 관 광 지 명                                                                                                                                                                                                                                         |
|-----|------|-------------------------------------------------------------------------------------------------------------------------------------------------------------------------------------------------------------------------------------------------|
| 부 산 | 5    |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태종대, 해운대                                                                                                                                                                                                             |
| 인 천 | 2    | 마니산, 서포리                                                                                                                                                                                                                                        |
| 대 구 | 2    | 비슬산, 화원                                                                                                                                                                                                                                         |
| 경 기 | 14   | 대성, 산장, 수동, 장흥, 용문산, 신륵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소요산, 궁평                                                                                                                                                                                 |
| 강 원 | 42   |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간현, 옥계, 주문진, 연곡, 등명, 대관령 어흘리, 무릉계곡, 망상, 추암, 구문소,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팔봉산, 홍천온천, 어답산, 유현문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미탄마하생태, 화암, 아우라지, 고석정, 직탕, 광덕계곡, 후곡약수터, 내설악 용대, 방동약수터, 스피디움,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오색, 지경,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
| 충 북 | 22   |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능암온천, 충주호체험,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제천온천, 만남의광장, 성내, 속리산레저, 구병산, 장계, 송호, 다리안, 수옥정, 괴강, 무극, 천동, 레인보우힐링, 온달                                                                                                                               |
| 충 남 | 23   | 천안종합휴양, 태조산, 곰나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아산온천, 간월도,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구드레, 서동요역사, 금강하구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예당, 덕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
| 전 북 | 21   |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옹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온천, 윤일암반일암                                                                                                                       |
| 전 남 | 27   | 대구면도요지,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 쌀문화 테마공원,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골,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                                                             |
| 경 북 | 33   | 경산온천, 고령부례, 문경온천, 문경상리, 오전약수, 다덕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포리, 예천삼강, 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탐산온천,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성주호                                                       |
| 경 남 | 21   |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승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실안, 금서, 전통한방휴양, 중산,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목계, 농월정, 미송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
| 제 주 | 14   | 제주남원, 돈내코, 수망, 미천굴, 토산, 표선, 광지, 제주상상나라탐라공화국, 김녕해수욕장, 돌문화공원, 봉개휴양림, 용머리, 함덕 해안, 협재 해안                                                                                                                                                            |
| 합 계 | 226  | 전체 관광지 면적 합계: 120,641,844m <sup>2</sup>                                                                                                                                                                                                         |

□ 관광단지: 53개소

| 자치단체       |             | 명 칭         | 위 치                                  | 지정면적(m)     |
|------------|-------------|-------------|--------------------------------------|-------------|
| 부산         | 기장군         | 오시리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당사리 542                | 3,662,486   |
| 인천<br>(2)  | 강화군         | 강화종합리조트     |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 652,369     |
|            | 옹진군         | 선미테마아일랜드    |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187번지 일원                | 666,417     |
| 광주         | 광산구         | 어등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500                    | 2,736,219   |
| 울산<br>(2)  | 북구          | 강동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35-2                   | 1,367,240   |
|            | 울주군         | 울산 알프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5-1번지 일원         | 1,499,978   |
| 경기<br>(3)  | 안성시         | 안성 죽산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29                      | 1,352,312   |
|            | 평택시         | 평택호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1-1                    | 663,013     |
|            | 화성시         | 화성 국제테마파크   |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 2,854,708   |
| 강원<br>(16) | 고성군<br>(2)  | 델피노골프앤리조트   |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74-2                    | 900,018     |
|            |             |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60번지 일원              | 849,114     |
|            | 속초시         | 설악한화리조트     | 속초시 장사동 24-1                         | 1,332,578   |
|            | 양양군         | 양양국제공항      |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496-4                    | 2,730,219   |
|            |             | 원주 오크밸리     |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61                     | 11,349,949  |
|            | 원주시<br>(3)  | 원주 더 네이처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21                    | 1,444,086   |
|            |             | 원주 루첸       |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                   | 2,644,254   |
|            | 춘천시<br>(2)  | 라비에벨        |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63,<br>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 | 4,843,796   |
|            |             | 신영          |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224                    | 1,695,993   |
|            | 평창군<br>(3)  | 휘닉스파크       |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5-1                   | 4,233,039   |
|            |             | 평창 용평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30                     | 16,219,204  |
|            |             | 대관령 알펜시아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425                     | 4,836,966   |
|            | 홍천군<br>(2)  | 비발디파크       |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 7,052,479   |
|            |             | 홍천 샤인데일     | 홍천군 서면 동막리 650번지 일원                  | 2,421,331   |
|            | 횡성군<br>(2)  | 웰리힐리파크      |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204                      | 4,830,709   |
|            |             | 드림마운틴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1                   | 1,796,574   |
|            | 경북<br>(7)   | 경주시<br>(4)  | 보문                                   | 경주시 보문로 446 |
| 감포해양       |             |             |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748                    | 1,804,215   |
| 마우나오션      |             |             |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                      | 6,419,256   |
| 북경주 웰니스    |             |             | 경주시 안강읍 검단장골길 181-17                 | 809,797     |
| 김천시        |             | 김천 온천       | 김천시 부항면 부항로 1679-15                  | 1,424,423   |
| 안동시        |             | 안동문화        |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69                     | 1,655,181   |
| 경남<br>(3)  | 칠곡군         | 웰빙-스테이 레포츠  |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73-3번지               | 998,192     |
|            | 거제시         | 거제 남부       |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 24-11               | 3,693,875   |
|            | 창원시         | 창원 구산해양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52-78              | 2,842,634   |
| 전북         | 남원시         | 웅동북합레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8-1                 | 2,101,234   |
|            |             | 드래곤         |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                  | 795,133     |
| 전남<br>(5)  | 여수시<br>(3)  | 여수 화양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470-14                   | 9,873,525   |
|            |             | 여수경도 해양     | 여수시 대경도길 111                         | 2,152,973   |
|            |             | 여수챌린지파크     |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333-2                | 510,424     |
|            | 진도군         | 진도 대명리조트    |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31-28                    | 559,089     |
|            | 해남군         | 해남 오시아노     | 해남군 화원면 한주광로 201                     | 5,073,425   |
| 충북         | 증평군         | 증평 에듀팜 특구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21                | 2,622,825   |
| 충남<br>(3)  | 부여군         | 백제문화        |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74                     | 3,024,905   |
|            | 천안시         | 골드힐카운티리조트   |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                 | 1,692,980   |
|            | 보령시         | 원산도 대명리조트   | 보령시 원산도리 산 219-2                     | 966,748     |
| 제주<br>(8)  | 서귀포시<br>(5) | 중문          |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 3,200,925   |
|            |             | 성산포해양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 746,939     |
|            |             | 신화역사공원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                   | 3,985,601   |
|            |             | 제주헬스케어타운    | 서귀포시 동홍동 2032                        | 1,539,339   |
|            |             | 록인제주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00                     | 523,766     |
|            | 제주시<br>(3)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                   | 587,726     |
|            |             | 프로젝트 ECO    | 제주 제주시 봉성리 산35                       | 696,932     |
|            |             | 묘산봉         |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                | 4,221,984   |
| 합계         |             | 53개         |                                      | 157,674,34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